

③-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12	2,170,000	1,435
공무원 일·숙직비**	1,139	68,3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970	3,188,022	1,618

* 소방공무원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일반직, 기타직, 공무직 등) : 1인당 1,435,000원 × 1,512명

• 공무원 일·숙직비

- 월~토요일 숙직 : 60,000원 × 2명 × 313일

- 일요일 숙직 : 60,000원 × 3명 × 52일

- 휴일 숙직 : 60,000원 × 3명 × 119일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남원시 현재 통이장수 509명 / 반장수 1,461명

(기본수당 및 상여금 : 300,000원 / 반장 보상금 : 25,000원)